



英國圖書館協會：公共圖書館 (1)

申 鉉 德 譯

[譯者註] : 本稿는 英國圖書館協會發行 A Libraries Handbook (L.J. Taylor編)중 pp. 277~290 部分을 翻譯한 것이다.

도서관협회는 항상 공공도서관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으며, 도서관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문제를 중앙정부가 빈번히 조사하므로써, 전후에 있어서 도서관협회에 의한 다양하며 허다한 성명서를 기초하는데 주력해 왔다. 여기에서는 소수의 좀더 최근문서들을 인용하는데 불과하지만, 현행정책의 양상을 결정하는 2개의 문서에 관한 약간의 언급을 해야 하며, 지난 30여년간에 정부에 대한 도서관협회의 영향에 관한 추진력이 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2개의 문서 중에 좀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업무의 장래 필요성에 관한 권고를 첨부한 기본적인 조사인 영국의 공공도서관제도에 관한 엘·마르·백클빈 보고서(1942)이다. 이를 출간함에 있어 협회는 동 보고서의 결론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그대신 협회가 백클빈보고서를 완전히 검토하므로써 일련의 제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공공도서관업무 전후의 재조직 및 발전(1943)이다. 이러한 제안이 제출된후 33년간에 허다한 변천을 거쳤지만, 협회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상당수의 문헌의 공공도서관업무의 요구사항에 관한 오늘날의 성명에 관한 산기록으로 채택될 수 있다. 업무의 의무규정(1965년까지 성취되지 않음), 지방도서관 당국의 업무를 지도, 고무 및 협조하기 위한 책임을 진 적절한 중앙정부부서, 적절한 지방당국에 의한 도서관관련의 유지, 핵심이 되는 도회지는 물론 주위의 지역을 포용하는 단위로 이러한 기관을 재조직하기 위한 필요성 및 이러한 단위가 일반적으로 25만 내지 75만사이 에 있는 인구(1969년에 제안된 레드크립—모드의 단일기관에 의하여 특정지위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는 것등은 모두 협회의 1943년제안의 기본요소가 된다. 이 보고서가 취급하고 있는 기타의 문제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참고도서관의 지원(아직 미해결된 문제), 국가중앙도서관의 강화(1973년에 영국도서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력을 해서 다룬 일이 없음), 중앙카달르강기관의 창설(영국국가서지—BNB의 기관으로 1949년에 설립됨), 적합한 도서관직원의 고용과 훈련,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및 공공도서관업무가 교육의 일부는 아니지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행해지는 교육적기능을 요하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라는 견해등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하는 주요한 문헌은 지방정부의 재조직에 관한 것으로서 1966년에 영국의 지방정부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for England)에 제출하기 위하여 협회에 의하여 준비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협회의 공공도서관업무의 구조에 관한 로버츠위원회에 대한 입증은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의 통과에 의하여 대체로 대치되었다. 도서관의 권한을 큰 기관에 할당하는데 대하여 협회가 지지를 하는 것을 도서관계 자체 내에서의 반대에 봉착하여 “지방정부법안 및 도서관업무”에 관한 성명을 하게 되었다. 기업 및 정부의 관리기술에 관한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시대에 있어서, 협회는 몇개의 업무기능이 일개의 위원회에 의하여 취급되는 경우에도 도서관부서의 책임자가 정책위원회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성명에 의하여 다루어진 공공문제에 관한 특별한 제는 고등교육과 공공도서관의 관계(1963), 공공도서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의 작성(1975), 기본공공도서관업무에 대한 요금을 과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1970), 공공도서관의 참고업무를 위한 표준규정(1970),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하여 소규모업체를 조언함(1975), 새로운 도서관당국의 직원구조에 대한 조언(1953) 및 스코트랜드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스코트랜드 도서관협회의 2개문서등이다.

본 부분은 공공도서관업무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문제에 관한 3개의 성명에 의하여 마무리지어진다. 지방정부재정에 관한 Layfield위원회에 대한 증빙작성(1974/1975), 새로운 지방정부당국의 내부정보업무의 조직

(1973) 및 기술행정가의 훈련에 관한 각서(1970)

2개의 문서의 부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평을 요한다. 1960년에 협회는 공공도서관건물이라는 예시된 판프렛에서 공공도서관건물의 규정에 관한 권고를 이미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IFLA의 도서관건물에 관한 기준의 잠정적체택(1958-59) 직후에 행하여졌다. 양자의 성명은 잉그랜드 및 웨일즈의 공공도서관업무에 관한 문교부의 기준(1962)의 부록Ⅲ에 차후에 발행되었다(IFLA의 문서는 전문이 인용됨). IFLA는 그 기준을 이제 정식으로 수정하여 공공도서관의 기준(1973)으로 재발행했지만, 협회는 1960년 문서에 관한 성명을 정식으로 행하지 않았으며 협회는 그 기준의 주요의도가 공공도서관업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보다 발전도상국가들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데 있다는 근거하에 IFLA의 세성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한테 불과하다. IFLA기준의 요약은 본 편람 제3부에 실려 있다.

공공도서관업무의 구조(1966)

영국의 지방정부에 관한 왕립위원회에 제출된 증빙 각서

서 언

1. 1850년의 제1차 공공도서관법 이래, 공공도서관업무는 지방정부의 업무였다.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은 국무대신의 감독하에 지방정부내에서 행해지는 법이 정한 업무로 만들었다. 이법에 의하여 도서관당국은 무료로 그 지역내의 모든 주민, 정규학생 및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이며 유효한 도서관 업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2. 1877년에 창설된 이래 도서관협회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통일된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업무를 신장시키고 개선하도록 추구하고 왔다. 이러한 업무를 지방정부의 관리로부터 제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임시기관 또는 지역을 통해 국가의 센터에서 관리하려는 방안은 이러한 업무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업무라는 근거에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도서관업무가 계속해서 어떠한 세 지방정부구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지역 사회업무로서 주요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동 업무는 국무대신의 감시하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비록 근본적으로 지역업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단위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좀더 광범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접근방법은 현재에 있어서는 일부의 잘 발달된 지

방정부단위(예를들면, 광범위한 자료의 소장을 가진 대도시 및 군단위), 국가 및 정부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학술단체, 산업체 및 기타 기관의 특수도서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광범위하며 심원한 자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4. 이러한 업무의 변화하고 있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업무 및 필요한 기준의 범위, 요구되는 업무를 가장 잘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도서관당국의 형태, 이러한 당국이 전문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과 민주적인 지역관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England 전체를 통하여 좀더 통일적이며 충분한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타 형태의 도서관들과의 협력등을 들 수 있다.

기능 및 독자의 수요의 변천

5.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업무의 기능은 그 독자들의 교육, 정보 및 오락등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있었다. 정규 및 성인교육의 기준에 대한 계속적인 상승은 교육적목적에 위한 수준을 상당히 상승시켜 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공공도서관은 학교, 대학, 종합대학교 및 성인교육기관들이 제공해 주는 업무를 보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상당수가 지식의 전문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공공도서관에서 찾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는 특히 과학기술, 사회과학 및 역사와 예술분야에 있어서 현저하다. 새로운 오락방법의 출현, 특히 텔레비전 및 대중용 소책자(paper-back) 등은 오락적인 독서를 위한 도서관사용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옛날의 신문실(newspaper room)은 한때 모든 마을도서관의 특징이었지만 대부분 사라져버렸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 및 일반독자를 위한 좀더 많은 독서의 장소를 위해 양보하거나, 대출 또는 참고부서등에 자리를 양보했다. 아동도서관은 좀더 많은 수요를 갖게되며 병원과 같은 양로원 및 집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업무도 확장되고 있다.

6. 우리사회가 좀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많이 갖게 됨에 따라 도서관업무가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의 절충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일은 아니다. 더우기 이러한 업무는 전국적인 업무이며, 비록 그 운영이 마을 또는 군에 따라 어느정도 상이하기는 하지만 요구되는 업무의 통일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서관이용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업무의 합리적인 기준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7. 필요한 업무의 범위

i. 지방업무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직접

접근 :

- a.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대출업무
- b. 참고 및 정보업무 신속하게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quick-reference material) 및 기본적인 저작의 포함시켜야 할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도집 및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무의 요지가 정규분관이나 정규분관 도서관처럼 많은 인구를 갖지 않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도서관의 업무 사항이 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업무의 요지가 도서관당국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조직체(regional or area organization)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 ii. 도서관당국의 분부(또는 중앙도서관)
 - a.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전도서관기관의 분야에 대한 수요에 응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및 깊이의 대출업무.
 - b. 다음과 같은 수요에 응하기 위한 참고 및 정보 업무 :
 신속한 참고
 모든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
 지방역사자료
 지방적인 관심사의 주제
 특수한 주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예컨대, 상업, 과학기술, 음악, 사회과학, 국제문제 등등 일부의 도서관에서는 특히 큰 도서관일 경우에 특별 주제부서가 대출 및 참고의 2중기능을 복잡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 c. 학교, 성인교육기관, 예술·음악·연극·영화 등에 전심하고 있는 지방단체, 병원, 청소년기관, 양로원 및 교도소 등의 집단에 대한 업무

업무의 기준

- 8. 참고도서관이 그 지역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적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도서관기관을 위한 외부의 재정적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직원의 안배 및 직원의 필요성등을 유보하면서, 우리는 Working Party Report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
- 9. 상기 7.i.항에서 인용된 지방업무문제점에 대한 업무의 기준이 Working Party Report의 26—57, 92 및 103—106항들에서 기본적인 도서관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추천한다.
- 10. 우리는 또한 상기 7.ii.항에서 인용된 업무를 위한 도서관기관에 대한 업무의 기준이 Working Party

Report의 62—64 및 68—106항들에서 10만 내지 그 이상의 인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보다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추천한다.

도서관 기관

11. 상기 7내지 10항에서 도서관기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동시에 국무대신이 기타의 기준을 설정할때 까지는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 Act, 1964)의 요구 사항에 맞도록 달성시켜야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12. 1850년으로부터 1964년의 기간동안에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소규모의 지방정부 단위보다 대규모의 단위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업무가 좀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동조할 수 있을 것 같다.

13. 모든 도서관이 그들자신의 자원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국가적업무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규모가 작은 기관일 수록 이러한 국가의 도움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상기한 효율적인 범위의 대출, 참고, 일반적 그리고 특수한 도서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기관이 인구 및 필요한 재정적재원의 면에서 충분히 규모가 커야한다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목적기관(most-purpose anthoritier) 또는 기능 및 권력을 대표하는 어떠한 새로운 구조에 있어서의 일단계(firt-tier)기관은 도서관기관이어야 할 것을 추천한다. 도서관기관의 평의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그 자신의 위원회에 의하여 도서관업무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다. 법에 의하여 군도서관의 운영책임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한 1919년으로부터 1964년간의 기간의 군평의회와의 경험은 이러한 배려가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아서 발전적인 도서관업무를 위한 최상의 처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5.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업무를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직원과 유능한 인체들을 유인하는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좀더 많은 졸업생들이 사서훈련생(trainee librarian)으로 차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업무에 있어서 전문적 자격을 가진 사서들의 경력으로서의 전망이 국가 및 대학도서관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Working Party Report가 그 보고서의 93항에서 주의를 환기시킨 특별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서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도서관직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수업무의 발전

16. 특수도서관업무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좀더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과학 및 기술정보업무에 대한 계속적인 고도의 수요가 있으며, 공공도서관기관은 산업체, 공과대학교 및 대학, 연구단체들과의 협조적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해 주는데 중대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점증하는 도서관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독립해서 또는 상의하드로서 유효한 도서관기관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예술, 학교 및 병원도서관들의 특수분야가 있다.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의 협력

17. Working Party Report on Inter-Library Co-operation②은 Roberts Reports③에 의하여 추천된 기술적인 적용에 관하여 1963년에 보고했다. Working Party Report는 Library Adrisory Council for England에 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다. 국무대신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의 국가 및 지역적인 협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던 간에 공공도서관이 결과적으로 개선된 도서관업무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위에서 제의한 좀더 규모가 크며 효과적인 도서관기관이 앞으로 결정될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조내에서 도서관협력의 합리화를 용이하게 해 줄 것이며, 국가의 전체적인 도서관자원을 현재보다 이용자들에게 좀더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는 바이다.

지방정부법안과 공공도서관업무 (1971)

약간의 논쟁점에 관련된 도서관협회의 정책

England에 있어서의 도서관업무를 위하여 제기된 지방정부법안 198항의 조치는 도서관협회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Royal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의 보고서와 1971년의 현 정부백서에 얻어진 결론과 일치하며 양자는 도서관의 권한이 교육기관인 동시에 소규모의 기관에 의한 행정이 적절하지 못한 평의회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1. 도서관과 교육이 공존해야하는 이유

- a. 교육과 도서관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
- b. 모든 수준의 정식교육이 공공도서관에 의한 업무의 지원을 필요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최근에

학교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대학 및 대학원교육의 양자를 위한)이 현재의 군 및 구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c. 대규모의 공공도서관만이 이러한본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 직원 및 교통수단등을 가지고 있다.
- d. 만일 2개의 업무가 동일한 기관 밑에 있지 않으면 교육은 그 지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 e.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교육은 도서, 직원 및 교통수단등에 있어서 중북을 면치 못할 것이다. 5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에 있어서 이러한 중북은 최소한 25만파운드 가 들며 그중에 적어도 받은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독립된 시설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 f. 이러한 모든 요구에 충당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므로, 공공 및 대학도서관은 지방적,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g. 지역적인 협력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자의 업무를 위한 1개의 대규모 기관을 갖는데 있다.
- h. 대규모 공공도서관은 좀더 효과적으로 대학교 및 국가도서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도서관들은 후자가 덜 관련이 깊은 문의들을 공공도서관에 의뢰해 주는데 충분한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또한 그들의 전문가 및 지방장서를 대학교 및 대학도서관에 활용시킬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커야하는 이유

- a. 대규모의 기관만이 대중이 필요로하는 광범위한 도서관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 b. 대규모의 기관만이 전문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직원을 가지고 있다. 이하는 한결같이 높은 수준에 있는 마을 및 군에 제공되어야 할 전문적업무의 실례이다.
아동 및 학교도서관, 음악 및 예술, 과학 및 기술, 산업 및 상업에 대한 업무, 병원 및 가사관련 사항.
- c.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은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관기관을 필요로 하며, 국무대신이 도서관업무를 개선시키

기 위한 감독 및 장려를 위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도서관을 필요로하는 지역이 작으며 큰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의 어떠한 것도 충족될 수 없다. 이법의 시행은 공공기금의 사용이 극도로 절약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 막대한 경비지출을 요한다. 돈의 최상의 가치는 주의깊은 협조방안에 의거하여 재원을 광범위한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달성될 수 있다.

- d. 대규모 도서관기관에 대한 대안은 소규모도서관의 중복인데, 후자는 군전체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광범위하며 깊은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업무를 상호간에 대체로 중복시키고 있는 극히 한정적인 업무밖에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몇몇 지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며 협조적인 배려가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협력은 협조에 대한 대체가 될 수 없다.
- e. 대규모의 기관만이 직원을 위한 광범위한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다. 최상의 직원은 이러한 문제와 큰 도서관이 최상의 경력 전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도서관에 가려한다.
- f. 소규모기관은 컴퓨터나 기타의 자동화방법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경영기술을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없다.

3. 지방적관여

도서관협회가 강력하게 교육기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에게 도서관의 기능을 할당하려는 정부의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District Council(지구평의회)이 도서관의 지방행정에 최대한으로 참여 및 관여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도서관협회가 제의했다.

공공도서관업무를 위한 관리구조 (1973)

도서관협회는 Royal Charter(칙허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최상의 도서관 행정을 장려하는데 있다. 협회는 빈번히 도서관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구조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고 있다.

협회는 도서관업무의 경제적계획 및 발전을 위하여 이익이 되게하려면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Bains보고서인 The new local authorities: management Structure(9.14항 및 도면 2(b);

9.32항 및 도면 4(b)에서 확인된다 있다. Roberts위원회는 일찌기 관장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은 그후에 모든 관장이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전체를 통하여 도서관업무의 현저한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특히 군에 있어서 관장이 책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개선된 관리방법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비록 관련이 있지만 도서관업무를 포함하는 업무의 책임자로 관장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서관협회는 또한 그 업무의 성격이 여가선용, 예술 및 문화는 물론 교육, 사회적업무, 보건업무, 산업 및 상업등에 관련된 광범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책임을 지는 독립된 위원회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지니고 있다.

이나라 및 외국에서의 경험이 보여줄 바와같이 도서관업무에 관한 직접 관리를 주로 기타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밑에 두는 것은 도서관업무의 의곡내지 미개발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만일 독립된 위원회가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최소한도 교육 또는 예술 및 문화위원회등과 같은 가급적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위원회의 도서관분과위원회로 되어야 한다. 도서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포츠, 공원 또는 여가선용이나 즐거움을 위한 위원회의 집씨 또는 카라반의 위치에 관한 것 등을 다루는 것과 도서관을 배합하는 것은 도서관의 효과적인 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고등교육을 위한 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관계 (1963)

우리는 영국 및 웨일즈의 공공도서관업무기준(Standards of Public Library Service in England and Wales)의 권고안을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물론 독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도서 및 연구실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적절한 대학교 및 대학의 건물과 공공도서관의 양자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승인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예컨대 원자력관계간행물, 정부 보고서 및 기관의 공문서등과 같이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으로서 각 지방대학교 및 대학의 도서관들이 중복시키는 것이 경제적일 수 없는 문헌들을 근거자료로서 점차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지정된 도서의 대학도서관 부분이 빈번하게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수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추가적인 부분을 대량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계속적인 사용을 위한 기본교과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아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정규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들의 방학기간중에는 공공도서관을 통해서만 필요한 문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또는 기타의 이유때문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압력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그것과 동시에 증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장비 및 장소를 위한 경비지출에 최고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Working Party(106항)의 권고안을 승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도서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채정직원을 받아서 적절한 분야에 관한 그들의 연구장서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장려해 주어야 하며, 국가, 대학교, 특수 및 공공도서관들을 포함하는 연구장서의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에 대규모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려한다.

공공도서관업무에 관련된 중앙정부계획(1975)

사서들 전체가 내무성(영국의 경우)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는 특정한 도서관개발작업이 중앙정부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도심원조계획(Urban Aid Programmes)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도심원조계획 및 1966년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66) 11항의 규정에 의한 배열의 개략을 이하에 설명한다. 사서들은 또한 지역사회개발작업에 관한 정보를 환영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도심계획

1969년의 지방정부지원(사회적빈곤)법(Local Government Grants(Social Need) Act 1969)에 의하여, 내무대신은 자신의 의견으로 그들의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도심지역에 '특별한 사회적빈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하는 지방당국들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의를 고려하는 주요기준은 지원을 요청하는 관련작업 또는 기관이 마을 또는 도시에 있는 다양한 박탈을 당하고 있는 지방의 지역이라는 심각한 사회적빈곤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은 영연방 이민의 대규모 집중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다른 방법으로는 유효하지 못하며 지역적인 박탈에 대하여 상당히 급속한 효과가 있는 보통 소규모의 특별시설을 제공해주므로써 주요계획의 업무를 보충해 주려는데 있다. 지원은 금전적 및 비금

전적인 양자의 광범위한 방법에 의하며, 예컨대: 이웃 조언센터, 지역사회센터, 자원센터 및 개발, 장비 그리고 이민들을 위한 언어센터의 직원채용등이 있다. Huddersfield, Kirkless 및 Bradford 기관들이 도심계획에 의하여 아세아 이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업무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은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은 지방기관경비의 75프로의 비율로 지급이 되며, 그 지역의 작업비의 25프로는 자체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프로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지방당국은 임의기관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매년 내무성은 영국내의 모든 지방당국이 특수작업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회람을 발부하고 있다. (9월로 신청마감을 한) 도심계획회람(Urban Programme Circular) 제11호에 의하여, 예를들면, 약 4백만파운드가 1975/76년도에 시작되는 새로운 금전적작업과 1974/75년도 또는 1975/76년도 초에 개시될 비금전적 작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작업만을 고려할 수 있었다.

도심계획회람 제12호: 이민의 고도로 밀집된 지역

추가적인 6백만 파운드가 이민의 고도밀집으로 인하여 업무가 특별한 긴장하에 있는 지역, 특히 동아프리카로부터의 아세아 이민을 흡수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지역을 가진 당국의 도심계획에 활용되어 왔다. 지원은 1974-75, 1975-76 및 1976-77의 3개 회계년도의 지출에만 관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도심계획의 운영규정과 유사하다. 도심계획회람 제12호에 의한 지원의 출원은 1974년 9월 27일까지 해야한다.

1966년의 지방정부법 11항

이민사회의 필요와 좀더 특별히 된 사항은 1966년의 지방정부법 11항에 의하여 주어진 지원이다. 동법의 본항은(학교정원의 2퍼센트 내지 그 이상의 영연방이민을 가진) 지방당국을 언어 및 관습이 여타의 지역사회와 상이한 상당수의 영연방으로부터의 이민을 그 지역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를 하는데 요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드는 경비에 대한 75프로의 재무성 지원을 청구할 수 있게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11항의 지원은 지방당국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관련직원의 봉급 및 급여에 국한되어 있다, 도심계획과 대조해 볼 때, 당국이 11항의 지역으로 승인을 받고 구와 관련하여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동항에 의거하여 제외된 소규모의 작업만이 승인을 받게 되며 11항의 지원이 지급되게 된다. 1973/74년도에 약 70의

(오래된)지방당국이 거의 1천1백30만파운드의 지원—수익경비(grant-earning expenditure)를 부과했다.

11항의 지원 및 도집정보에 관한 문의 및 더 많은 정보요청은 런던의 딘·라일가의 호스페리·하우스에 있는 내무성 I.Z.부처(I.Z. Division, The Home Office, Horseferry House, Dean Ryle Street, London SW1P ZAW)로 연락할 것.

지역사회개발작업

사서들은 비록 불과 12개의 지방당국(England에 10, Scotland에 1 및 Wales에 1)내의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개발작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작업은 중앙과 지방의 공식 및 비공식노력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본작업에 관한 정보는 상기한 주소의 내무성 지역사회계획부(Community Programmes Department)로부터 얻을 수 있다.

도심계획회람13호 : 1975년의 공휴일작업

상기회람에 대한 관심이 또한 주어졌으며, 이에 관한 좀 더 많은 정보는 내무성의 J. McBride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1-221-7178이다. (Mr. J. McBride, The Home Office, Horseferry House, Dean Ryle Street, London SW1P ZAW)

공공도서관업무에 대한 요금부과 (1970)

1. 사회적업무에 관한 경제성의 요구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해온 사람이 그가 빌린책에 대하여 직접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도서관협회는 고도의 교육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요한 방어의 한 방법임을 믿는다. 완전히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광범위한 주요공적문제에 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그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알려진 의견을 의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및 의식은 두가지방법—말표된 낱말과 글로된 낱말로 얻어지며 양자중에 글로 된 낱말이 좀더 효과적이며, 좀더 광범하게 접근될 수 있으며, 또한 때로는 좀더 믿을 수 있다.

3. 만일 시민이 그가 원하는 지식을 얻으려면, 기초적인 독서능력뿐만 아니라 인쇄물과 친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이렇게 친숙하게 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며 이 나라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기능은 대다수의 인구가 책의 독자로 될 때까지는 완수되지 못할 것이다.

4. 공공도서관업무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정보, 교육 및 오락의 세가지이다. 전부가 필요하며 가치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업무의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열거한다. 1927년의 Kenyon에 보고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아주 잘 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그가 업무를 행하는 지역의 지성적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성적생활은 그들의 지성의 기초적 호기심이 바로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고등연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포괄한다. 도서관은 지식에 대한 진지한 추구자는 물론, 기초적인 호기심을 단순히 만족시키려는자 및 휴양내지 오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도서관협회의 신념은 대출에 대한 요금의 부과는 공공도서관의 사용 및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5. 공공도서관업무(대출은 물론 참고시설)의 무료이용은 1850년의 제1차 공공도서관법의 통과이래 영국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때 이후로 공공도서관업무의 개선을 가져온 초기의 보고서인(1915년의 Adams, 1927년의 Kenyon, 1959년의 Roberts)들은 이 원칙을 지지했다. 1964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법의 기초가 된 Roberts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도서관의 무료이용 규정은 처음부터 공공도서관의 주요목적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를 채택할 때부터 공공도서관을 특색있게 해줄 국가가 무료업무의 전통을 벗어나려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긴다.”

6.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세계의 대부분의 기타국가들의 경험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가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으며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예컨대 미국, 서독, 홀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금을 과하지 않는 도서관과 더불어 대출요금을 과하는 도서관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개 형태의 도서관간의 비교는 모든 형태의 도서관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지역사회에 대한 도서관업무의 좀더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는 도서관 쪽에 연계를 잇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요금이나 신청금을 내는데서 벗어나서 완전히 무료업무로 지향하고 있다.

7.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도 또한 무료업무의 원칙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업무의 전통은 이나라의 중요한 문화적 수출의 실례

가 되고 있으며 무료업무의 전통은 주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된다. 어떤면에서 요금을 받는 업무가 그렇게 유효하게 성취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의 교육적 발전에 참으로 도움이 되어 왔다.

8. 공공도서관의 교재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규 또는 비정규의 교과과정을 위한 모든 주제에 관한 가치 있는 도서의 충분한 소장재에 대한 규정은 언제나 공공도서관의 주요관심사의 하나이며 또한 이것은 공개대학교 및 성인교육을 연결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은 상당한 교육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흔히 도서 및 도서관의 그들에게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물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비록 대부분은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좀더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되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9.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Kenyon보고서의 말처럼 그 지역에 있어서의 단순한 지성적 생활의 중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중점 및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ngland의 지방정부에 관한 왕립위원회 및 NALGO를 위하여 행한 조사를 포함하는 수많은 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업무가 아마도 모든 공공업무중에 일반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0. 도서관 간의 협력체제의 결과로 다수의 공공도서관에 마련한 대출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특별주제의 장서에 관한 것을 또한 언급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특히 런던 및 기타의 대규모 집합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장서는 관련지역도서관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는 대출자들까지 유인하게 된다. 요금의 부과는 이러한 장서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그 이유는 대출자가 2개의 도서관(일반적인 독자를 위한 것과 특별한 분야에 관한 것)에 대한 회비라는 것을 꺼리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서관에 대한 특혜가 요금의 부과로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 도서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교육 및 정부자료의 한 특수범주는 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기술자료의 대출이다. 이러한 개인은 고용주를 위해서는 청약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2. 공공도서관은 대학교 및 기타의 학생들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는 일반대중 및 그 일부에 대한 상당량의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다. 대학교 및 대학도서관도 또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요금부과는(비록 학생에 대해서는 호의상면

제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일부를 그들 전부가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학교 및 기타의 학술도서관은 물론 국가도서관에 이양하는 결과가 된다.

13. 흔히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큰데 비하여, 공공도서관을 위한 도서의 선정은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955년에 부렛셀에서 열린 도서관 및 문서기록센터의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Libraries and Documentation Centers)에 의하여 승인된 말에 의하면,

“요금을 부과하는 도서관은 이러한 요금에 의하여 들어오는 수입에 부당하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책들을 마련하므로서 대중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가치가 크지만 별로 찾지 않는 책은 수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

14. 도서대출료의 도입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또하나의 결과는 독자들에게 지성적인 호기심을 어느정도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가치의 일부는 도서관내에서는 물론 집에서 대체로 무제한 하게 대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제약은 그로 인하여 도서관을 별로 쓸모없게 만들게 된다.

15. 공공도서관에 대한 방문은 널리 퍼지고 있는 자동차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가정적인 문제화 하고 있다. 아동들과 그 부모가 함께 도서관에 오게 되며, 아동들의 도서관 사용은 부모들의 회원수를 증가시키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금의 부과로 인해 부모들이 도서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동들이 도서관이용의 습관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습관을 다시 부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필상은 아동들이 자라난 후에 도서관의 회원이 되거나(또는 수입면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특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6. 지금까지 지적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 즉 교육도서의 이용, 사교장으로서의 도서관, 개인에 대한 기술도서의 대출특수주제장서의 이용, 도서선정의 요구등은 대출료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옷점은 요금의 부과가 이용에 제약을 가하므로서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사회의 지성적 생활의 축점이 된다는 개념을 각경우에 좁혀주고 있다. 도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영국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보편화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공개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7. 도서관간의 협조분야에 있어서 독자들을 위하여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2개의 발전은 무료의 접근에 의하여 가능해 질 수 있다. 그 하나는 독자의 자기지역의 관할권내에 있으나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한 도서관에만 등록하는 경우에도 티켓을 다른 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가 아직 영국내에 아주 널리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당국이 요금을 받는 액수에 있어서 상이하거나 요금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인 요금부과제도가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유익한 협조의 증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좀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적인 요금부과제도가 자기도서관의 서고에 없는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요청하여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 도서관대출의 복잡한 제도의 무능력에 대한 불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자들에게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도서관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도서관에 책을 대여해 주는 것을 틀림없이 싫어할 것이며, 이러한 동일한 태도가 결국 또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업무의 불공평과 현재의 우의를 해치게 될 것이다.

18. 그러므로 선택적인 요금부과는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시켜야 한다.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요금을 과할 필요가 있다면 그 대체안은 국가적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관리의 또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져놓고 보더라도, 도회지의 도서관권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도회지의 독자들로부터 책을 빌려 보아야 하는 농촌사람들에게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19. 어려운 문제는(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종류의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하며, 또 그 액수가 얼마이어야 하는가 등이다. 요금을 거두드리는 관리상의 곤란성과 그로 인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수입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별로 세밀하게 검토된 것 같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출간된 도서대출에 관한 제안된 요금부과에 관한 Leicester-shire의 연구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자들에게 연간 회비를 부과하는 것이며, 기타의 모든 제도(예컨대 대출 때마다 책당요금을 과하는 것)는 불가능한 관리비용이 든다는 것이 명백하다. 24셀링의 연간회비에 근거하여(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재 요금을 과할 수 있는 모든 독자가 회원으로 남게될 것을 상정하므로써, 이러한 계획이 실시되는 경우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Leicestershire군도서관의 총수입이 군도서관 경비지출을 눈에 뵈 정도로 상쇄시킬 수는 없는 액수에 불과하다.

20. 대출도서관의 대출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그 계획에 대한 예의 조항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퇴직년금을 받는 사람들은 면제해야 하는데 가난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학령 아동 및 정규학생들도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읽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교육적 또는 정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의 사례를 결정하는 방법? 공공도서관은 오랫동안 흔히 최상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공개대학교' 및 독학의 표본이 되어왔다. 목적이 있는 대출자에게 대한 요금의 부과는 개인이 자진해서 내는 세금이 된다. 요금부과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定義문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진지한 유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21. 요금을 과하게 되면, 도서관의 비용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전에 무료이던 영국의 일부박물관에 있어서의 최근 경험은 입장에 대한 극히 근소한 요금의 부과도 방문당 상당한 비용증가를 결과적으로 가지고 왔다. 이러한 요금부과에서 비록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한 경우에는 방문당 비용이 9셀링에서 2파운드 10셀링으로 늘었다. 만일 동일한 종류의 감소된 비용의 효율성(cost-effectiveness)이 도서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회비를 과하려는 압력이 끝나 나타나게 되고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부과로 생기는 수입의 정도는 항상 도서관의 경비지출에 뒤지고 있으므로 좀더 높은 요금 부과를 바라게 된다.

22. 도서관협회는 대출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1차적 과정은 도서관이용에 대한 요금부과의 효과를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사가 설정되면, 협회가 믿으려는 바와 같이 요금부과는 도서관업무의 이용을 위축시키고 그 성장을 제약하며,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인 실패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국민의 교육수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3. 고등 및 성인교육을 위한 요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 의한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만 일관성있게 요금을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목적과 초등 및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간에는 또한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독서능력이 거의 모든 지식에 친숙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결여는 정신과 인격의 발전전체를 저해하게 된다. 도서관의 이용은 기초교육의 보완이 아니라, 기초교육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21면에 繼續>

기계화가 발전된 배경을 보면 첫째로 그 도서관의 규모가 크거나 또는 도서관이 속해있는 모체기관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최고 경영자층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는 실례가 많다. 둘째로는 그 도서관의 성격과 모체기관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의 기계화를 이루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다. 셋째로는 도서관의 기계화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추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서관인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활동과 조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물론 도서관의 기계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산기를 도서관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모체기관에 설치된 전산기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경우와는 우선 소요예산과 인력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 전용으로 전산기를 설치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특수한 도서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전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도서관업무 만으로 전산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할만 한 배터의 양이 못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도서관기계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기계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며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기회에 한가지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는 여러 전문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는 기계화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도서관기계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점에 대해 기계화 분위장의 입장에서 자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좀더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하여 우리 나라의 도서관기계화 발전에 미력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변함이 없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원고를 쓰기 위하여 수집하였던 자료를 모두 분실하여 참고문헌과 인용한 자료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거듭 사과하는 바이다.

<30面에서 繼續>

부 록

도서관의 무료이용에 관한 2개의 국제권고안이 있다. 그 하나는 Unesco공공도서관 선언(1949)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적인 제도로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법이 명시한 기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금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직업, 주의, 계급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들은 공공도서관업무의 발달: 1953년에 IFLA의 공공도서관 부서에 의하여 마련된 Working Paper(로서 1955년에 Brussel에서 도서관 및 문서기록센터의 국제회의에 의하여 채택됨)에 포함되어 있다.

‘C.1.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공동비용에 의하여(국가의 공동기금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조를 받을 것인가 여부에는 관계없이—G.1—8참조), 지역사회전체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C.2.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든간에, 어떠한 요금, 회비 또는 기타의 요금을 이용자가 낼 필요없는 무료의 업무이어야 한다.

C.3. 대체방법은 이용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부분적인 업무(예컨대, 소설의 대출)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도서관이다.

C.4. 여러가지 중에 요금을 과하는데 대한 단점으로는 :

a. 비록 소액일찌라도, 필요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완전히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특별히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b. 보통 도서 및 도서관에 대한 요금부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교육적인 영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의 이익과 지역사회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과 이 도서를 선용하도록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c.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임에 의한’(by proxy) 대출(즉 요금을 지불하는 대출자인 타인으로부터 얻은 책을 이용하는 것)로 유도되는 때, 이러한 경우에는 도서관이 ‘위임’ 독자에 대한 완전한 교육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d. 요금을 부과하는 도서관은 이러한 요금부과에서 생기는 수입에 부당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하므로써 가치가 크지만 널리 찾지 않는 자료에 대한 요구 보다 대중적인 요구에 응하려 하게 될 것이다.’